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		
② 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새로운 ICT 기반서비스 출시, 방송통신 결합상품 증가 등 통신시장이 복잡·다양화되면서 통신분쟁이 증가하고, 신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급증 ○ 현행 통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(裁定)제도를 운영 중이나,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·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 발생 		
③ 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-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관련 전문가·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 - 전기통신역무 관련 손해배상,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, 이용계약의 체결·이용·해지 등 통신관련 분쟁을 조정 		
④ 사업부서	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	⑤ 담당자	곽진희 과장 이성훈 서기관
⑥ 선정기준	국정과제	⑦ 사업기간	'17년 ~ 계속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		'19.06.04.	최성호 국장 곽진희 과장 이성훈 서기관
○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		'18.12.11.	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김정섭 서기관
○ 분쟁조정제도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보고		'17.09.20.	김재영 국장 김종영 과장 김정섭 서기관